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
전문공보담당자 인권감독관 황성연
전화 031-5182-4523

보도자료
2020. 5. 19.(화)

제 목

甲 회사 자금 횡령 사범 1명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(부장검사 엄희준)는,
 - 자금관리인 B씨, 甲 회사 재무담당 전무이사 C씨와 공모하여, 甲 회사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A씨를 5. 19. 구속 기소하였음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: A (45세, 前 丙회사 회장)
-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 - 자금관리인 B, 甲 회사 재무담당 전무이사 C와 공모하여 '18. 10. 19.~'19. 1. 16. 甲 회사 계좌에서 乙 회사 등 4개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241억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 **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횡령)】**
 - 위 C와 공모하여 '18. 10. 19.~'19. 1. 위 횡령사실을 은폐하려는 회계 처리를 위한 허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문서에 甲 회사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교부 **【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】**
 - 횡령범행이 문제되자 위 C를 해외로 출국시키고, 생활비 등 명목으로 C에게 수 억 원을 송금해 주고, C가 해외공항에서 입국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하여 다른 나라로 출국시킴 **【범인도피】**
 - 위조업자를 통해 타인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다가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제시 **【공문서위조, 위조공문서행사】**

2 수사 경과

- '19. 1. 21. 수원서부서 고소장(고소인 : 甲 회사 대표) 접수
- '19. 3. 25. 수원서부서 → 경기남부경찰청(지능범죄수사대) 이첩
- '19. 11. 2. 피의자 A 구속영장 청구(구속전피의자신문 불출석, 도주)
- '20. 4. 23. 피의자 A 체포
- '20. 4. 26. 피의자 A 구속영장 발부
- '20. 5. 1. 피의자 A 사건송치
- '20. 5. 19. 피의자 A 구속기소

3 수사 결과

- 피고인 A 등은 甲 회사가 A씨가 지배하는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甲 회사가 위 법인들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,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을 만들어 甲 회사 자금을 횡령
-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형사처벌 등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C씨를 해외로 출국시킨 후 도피자금을 제공하고,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입국이 거부되자 전세기를 동원하여 C씨를 제3국으로 출국하도록 하는 등 공범 C씨를 도피시킨 사실 확인
- 피고인 자신도 도주한 후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위조, 소지하다가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제시한 사실 확인
- 검찰은 오늘 기소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 ☒